

당사자본인신문신청

사 건 2000가합000 대여금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 본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원고 본인의 표시 : ○○○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ㅇ

- 2. 증명할 사항: 피고 항변사실을 입증하고자 함.
- 3. 신문사항: 별지와 같음

2000. 0. 0.

위 피고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당사자(원고) 본인 신문사항

-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 0. 0. 금 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 2. 원고는 위 돈을 원고가 20〇〇. O. O. 피고에게 빌려준 금 〇〇〇〇원의 원금 중 일부금으로 받은 것인지요?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373조	제367조	내지 www.klacoo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의 의 및 보 충 성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하며, 당사자본인신문은 다른 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직권 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용됨(민사소송법 제367조). 출석·선서·진술의무를 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기 타	술이 강제되지는 않고, 집 않고 과태료의 제재만 변	사소송법 제369조). 다만, 증인처럼 구인·과태료 등으로 출석·선서·전이 강제되지는 않고, 선서하고 거짓진술을 하여도 형법상의 위증죄가 되지고 과태료의 제재만 받음(민사소송법 제370조). *사자본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본인이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는 것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즉 신문사항에 포함된 다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람에 관한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시 할 것이 아니라 사자 본인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연후에 그어나라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사는 것이 정당함(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른 증거 없이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수 요구(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95 판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